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31
----------	-------

발의연월일 : 2025. 11. 25.

발 의 자 : 정을호 · 이연희 · 소병훈
조정식 · 차지호 · 김영호
윤종균 · 김영배 · 이병진
서삼석 · 진성준 · 김문수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비전·중장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에 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참여하거나 그 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행위는 위원 자격의 적격성뿐만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는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 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면직 또는 해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 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영리뿐만 아니라 임명권자 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교육 관련 업무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9조).
- 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금지행위로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③ 위원이 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면직 또는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임위원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면직을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 이 경우 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영리를”을 “영리 또는 비영리를”로, “업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리를”을 “영리 또는 비영리를”로 한다.

다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

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금지행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
3. 「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갖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또는 그 외의 과정에서 강사 등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행위. 다만,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위원장 면직 건의를 위한 회의 소집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임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신분보장) ① (생 략)	제6조(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 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 다.	②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제9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u>위반한 경우</u>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u><신 설></u>	③ 위원이 제2항제1호 ·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 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면직 또 는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 만, 위원장이 제2항제1호 · 제3 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임위원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면직을 건의 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제7조(결격사유)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3. (생략)

<신설>

② (생략)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
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
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생략)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③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
치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 이
경우 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겸직금지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영리 또는 비영리를-----
----업무. 다만, 비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업무는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리 또는
비영리를-----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금지행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제1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u><단서 신설></u> ② ~ ⑥ (생략)	2. <u>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u> 3. 「<u>자격기본법</u>」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갖고 「<u>초·중등교육법</u>」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또는 그 외의 과정에서 <u>강사 등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행위</u>. 다만,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회의) ① ----- ----- ----- ----- - <u>다만,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위원장 면직 건의를 위한 회의 소집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임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u> ② ~ ⑥ (현행과 같음)
---	---